

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일부개정 주요내용

① 차량 정밀안전진단 최초 시점을 차량 20년으로 강화(제2장 12.4.1., 별표4 7.)

- 철도차량의 최초 정밀안전진단은 차량 제작·등록 후 20년에 실시
 - * (행정예고 결과 반영) 최초 정밀안전진단 시기가 5년 내 도래하는 차량 등은 차량 20년이 되는 날부터 5년 이내 진단하도록 경과 규정 마련
- 20년 경과된 차량에 대한 유지보수 관리방안 수립
 - * (기술심의위 결과 반영) “기대수명을 초과한 철도차량의 사용금지” 관련 조문은 영업권·재산권 제한사항이므로 추후 법률 제·개정 통한 추진 검토

② 철도 주요부품 지정 및 관리방안 도입(제2장 12.7.3., 12.7.4.)

- 주요 핵심부품과 고장빈발부품을 철도안전 주요부품으로 지정하여 교체·정비주기 관리
- 철도안전 주요부품은 신뢰성 기반 유지보수체계를 적용·관리

③ 주요 안전관리 내용 강화

- 유지관리 기준에 점검항목, 점검주기 등을 포함하도록 내용 명확화(제2장 12.3.2.)
- 노후 유지관리 설비 및 장비의 교체계획 수립 추가(제2장 12.6.3.)
- 사이버 테러 대책에 관제시스템을 포함하여 수립(제2장 7.3.1.)
- 인력변경 시 적정성 검토 절차 수립·시행(제2장 11.3.2. 및 12.2.2)
 - 열차운행·유지관리 인력 변경 시 안전관리 인력의 적정성 검토절차 수립
- 철도시설물 중 일반인 출입금지 시설을 지정·관리(제2장 11.8.3.)
 - 철도차량 정비·주박시설, 위험물 보관장소 등을 일반인 출입금지 시설로 지정하여 관리
- 철도운영자의 자체 운영규정 수립·변경시 우리 부 제출(제3장 제1호·제2호)